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22
------	------

제출일자 : 2021. 8. 2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확대,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본 제도의 효용성을 재고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고등학교(일부 제외) 학비가 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의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 2)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동주민센터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7. 23. ~ 2021. 8. 12.):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학교” 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근속하고” 를 “재직하고” 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특기 장학생” 을 “특기장학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을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로, “1자녀로하고, 다만” 을 “1자녀로 하고, 다만,” 으로,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장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 있다.” 를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지급을하지” 를 지급을 하지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를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p>	<p><u>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고등학교</u>에 재학중인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고등학교</u> 및 <u>대학교</u>----- ----- ----- -----.</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u>근속하고</u> 있는 자의 자녀로서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생략)</p> <p>2. <u>특기 장학생은</u>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p> <p>② 제1항 각호의 <u>자격 요건을</u>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u>1자녀로</u>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u>민간단체로부터</u></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 ----- <u>재직하고</u> ----- -----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u>----- --</p> <p>1. (현행과 같음)</p> <p>2. <u>특기장학생은</u> ----- ----- -----</p> <p>② 제1항 각호의 <u>자격 요건을</u>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u>1자녀로</u>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u>민간단체 등으</u></p>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생략)

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급정지) 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지급을 하지 -----.

1. ~ 3. (현행과 같음)
4. -----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 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을자치과 자치행정팀 김광훈
연 락 처	2627 - 1043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 2007. 5. 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08. 06., 2007. 05. 23.>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08. 06.>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사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장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삭제 <2007. 05. 23.>

제6조(장학생 선정인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1999. 08. 06.>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삭제 <1999. 08. 06.>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1999. 8. 6.>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삭제 <1999. 08. 06.>

제11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36호, 1995.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33호, 1999.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6호, 2007. 0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